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(內)事(件)

商標拒絕 定

<大法院 第1部 判決>(1982. 11. 9)

裁判長: 大法院判事 이 일 규

關與法官: // 이 성 렬 · 전 상 석 · 이 희 창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: 임페리알 캐미칼 인더스트리스 리미티드
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: 特許廳長

3. 原審決: 特許廳 1982. 1. 30字, 抗告審判(당) 第1, 286號 審決

4. 主 文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的 負擔으로 한다.

5. 理由

上告理由를 본다.

原審決理由 記載에 의하면 原審은 本願商標인 “ELECTRO-DYN”은 아무 뜻이 없는 “DYN”部分이 어미에 附記의으로 結合된 것에 不過하여 “ELECTRO”에 그 主要部가 있다할 것인데 그 뜻이 “電氣의” “電氣에 의한” 등으로 그 指定商品인 分무기에 使用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“전기식 또는 전기용 分무기, 전기의 힘으로 작동되는 分무기” 등으로 인식될 수 있어 그 지정상품의 使用方法이나 用度를 表示하거나 그 作用 또는 效能 등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고 하여 本願商標에 대하여 原査定에서 商品의 用度 및 品質 效能表示에 不過하다는 理由로 이를 拒絕査定한 조치에 아무 違法이 없다고 原査定을 유지하였는 바 商標法 第8條第1項은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規程하여 그 第3號에 그 商品의 產地, 品質,

原材料, 效能, 用途, 數量, 形狀, 價格, 生産方法, 加工方法 使用方法 또는 時期를 普通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를 規程하고 있으므로 “전기의”라는 뜻은 結合인 “ELECTRO”의 “DYN”(原審은 아무 뜻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dynamic 즉 동적인 동력의 등의 뜻이 있는 말의 줄인 말로도 쓰여지기도 하여 이점 적절하지는 못한 흠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)을 결합시킨 本願商標는 결국 위 상표법 第8條 第1項 第3號에 定하는 商品의 效能, 用途, 使用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에 該當된다고 判斷이 된다.

결국 原審決은 이와 그 뜻을 같이 하여 正當하다 할 것이고 이에 訴論指摘과 같은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本願商標 “ELECTRODYN”은 造語이고 指摘商品은 電氣 또는 電子式이 아닌 靜電氣式 噴霧機로 靜

電氣式은 英語로 “ELECTRO-STATIC”으로서 “ELECTRO-DYN”이란 造語를 分離하여 “ELECTRO”가 이 本原商標의 要部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訴論 論旨는 獨自的 見解로서 採用할 바가 되지 못하므로 論旨는 理由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參 考

抗告審判

1980年 抗告審判(절) 제1286호

抗告審判請求人 : 임페리알 캐미칼 인더스트리스 리미티드

被抗告審判請求人 : 特許廳長
1979年 商標登錄出願 第10356號 拒絕査定不服, 抗告審判 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 文: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